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민병주, 박 · 석,
봉양순, 신동원, 유정인,
이봉준, 이성배, 이영실,
임규호, 임종국, 최재란,
최진혁, 한 · 신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제공,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7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
문서번호

2023101100000016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박승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1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